

롯데케미칼주식회사 이사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구성 및 권한

제 3 조(구성)

-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 4 조(의장)

- ① 이사회 의장은 제 9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삭제)
- ③ 이사회 의장에게 유고·출장·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결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의 2(선임독립이사)

- ① 이사회가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독립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독립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다.

- ② 선임독립이사는 제 9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독립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③ 본 조 제 2 항에 따라 선임된 선임독립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독립이사회회의의 소집 및 주재
 - 2. 독립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 3. 독립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제 5 조(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이사는 3 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회의)

이사회는 3 개월에 1 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제 7 조(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이 유고·출장·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4 조 제 3 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소집절차)

- ① 이사회 소집 시 회의일을 정하고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9 조(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 및 제 415 조의 2 제 3 항(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승인)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며, 정관 또는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 및 의결권이 없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그 이사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상정절차)

- ①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위임전결규칙에 따른 결재를 받아 안건을 작성하여 이사회일 1 주전까지 이사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 주관부서의 장은 전항의 의안을 심사한 후 상정여부를 대표이사에게 품의한다.

제 11 조(의안설명)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안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2 조(부의사항)

- ①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주주총회 상정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영업보고서의 승인
 - (3)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 449 조의 2 제 1 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4) 정관의 변경

- (5) 자본의 감소
-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7) 주식의 소각
-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10)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 (11)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12)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1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14)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6) 이사의 보수
- (17) 상법 제 542 조의 9 제 3 항 내지 제 5 항에 따른 회사의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서의 보고
- (18) 법정준비금의 감액
- (19)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 (20) 기타 주주총회에 상정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연간경영계획, 연간안전보건계획, 장기사업계획, 회사의 기본정책
- (2)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 (3) 계열사와의 거래 중 관련법이 정하는 사항
-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5) 공동대표이사의 결정
-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7)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8) 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투명경영위원회 규정, 보상위원회 규정, ESG 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9)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 (10) 국내외에 자회사(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점, 공장, 출장소, 사무소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1)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2)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공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삭제)

(2) 1 건당 자기자본의 1% 또는 1,000 억원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3) 1 건당 자산총액의 1% 또는 500 억원 이상의 고정자산 취득 및 처분

(4) 1 건당 자기자본의 2% 또는 1,000 억원 이상의 차입 및 연간 차입 한도

(5) 1 건당 자산총액의 1% 또는 500 억원 이상의 담보제공, 채무보증, 채무인수, 면제, 증여

(6) 수권자본 범위 내에서의 신주발행

(7)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 및 관련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8)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9) 준비금의 자본전입

(10) 전환사채의 발행

(1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2)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13) 자기주식의 소각

(14) 자사주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에 관한 사항

(15) 기부 협약 1 건당 당사가 부담하는 기부금의 총액이 10 억원 이상인 기부행위

(16) 중간배당의 실시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상법 제 398 조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경업,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회사 임원 겸임

(3)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5. 기타

(1) 중요한 소송에 관한 사항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정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임원의 승진, 미등기 임원의 선임, 해임에 관한 사항
4. ①항 이외의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13 조(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투명경영위원회
 4. 보상위원회
 5. ESG 위원회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의 위원은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전원 독립이사로 한다.
- ⑤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 14 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제 15 조(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회의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16 조(위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제 13 조 제 2 항 각 호에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 및 위원회, 경영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7 조(전문가의 조력)

이사회 또는 (독립)이사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금융, 회계, 법률, 기타 분야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 18 조(간사)

-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2008.3.3)

이 규정은 2008 년 3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4)

이 규정은 2009 년 6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18)

이 규정은 2011 년 3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4)

이 규정은 2013 년 3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3)

이 규정은 2016 년 3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8)

이 규정은 2016 년 11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6.27)

이 규정은 2017 년 6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9)

이 규정은 2019 년 12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4.23)

이 규정은 2020 년 04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26)

이 규정은 2020 년 11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03)

이 규정은 2021 년 03 월 0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5.20)

이 규정은 2021 년 05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9.16)

이 규정은 2021 년 09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3.26)

이 규정은 2024 년 03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7.23)

이 규정은 2026 년 0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